04. 산재보험처리시 유의사항

1. 산재보험처리시 유의사항

☒ 상시 1인 이상 근무하는 작업장은 산재보험이 강제 적용되므로 회사에서 산재처리를 기피하더라도 다친 근로자가 직접 청구할 수 있다.

☒ 사고현장사진, 사고목격자, 목격자 진술서 등을 확보해 두어야 한다. 추후 손해배상청구시도 필요할 경우가 발생한다.

☒ 사고보고서의 내용이 사실에 맞게 기재 되었나 확인하여야 하며 잘못된 경우 정정을 요청하여야 한다.

☒ 사업주와 민사합의는 치료가 종결되고 장해급여를 지급받은 후에 하는 것이 유리하다. 장해가 확정되지 아니한 상황에서 합의를 한 경우 후에 추가적인 청구를 못하게 된다.

☒ 타인에 의하여 재해를 당했다면(교통사고, 건설현장)가해자의 인적사항 증인(목격자)을 확보해 두어야 한다.

☒ 응급치료 및 기타 비용지출이 있으면 영수증을 잘 보관하였다가 추후에 청구해야 한다.

☒ 진단서, 요양급여청구서 등 관련서류 일체는 필히 복사해서 보관해야 한다.

☒ 산재보상청구는 3년 이내에 해야 한다.

☒ 산재보상, 민사배상에서 기준이 되는 임금은 사고발생 전 3개월간의 평균임금이므로 휴업급여 청구 시 평균임금이 정확하게 산정되었는지 확인해야 한다.

☒ 장기간 요양할 경우에는 평균임금은 개정해서 상향조정된 평균임금으로 보상을 받아야 한다.

☒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는 3년 이내에 하여야 한다.

2. 심사청구 및 이의신청

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보험급여에 관한 결정 또는 심사결정에 불복이 있는 경우 결정(심사결정)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심사 및 재심사청구를 거치지 아니하고 행정소송을 재기할 수 있다. (재심사결정에 불복이 있는 경우에도 위와 같다.)

☒ 원처분 지사의 보험급여 결정 ⇢ 행정소송 제기(보험급여 결정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)

☒ 원처분 지사의 보험급여 결정 ⇢ 심사결정 ⇢ 행정소송제기 (심사결정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)

☒ 원처분 지사의 보험급여 결정 ⇢ 심사결정 ⇢ 재심사결정 ⇢ 행정소송제기 (재심사 결정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)